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디지털복지기금의 설치 및 장애인 등 서비스 비용 감면 지원 〉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32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감면 개관 ..	3
2. 디지털복지기금의 설치 및 장애인 등 서비스 비용 감면 지원	5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31.

다. 회부연월일 : 2025.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무선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감면 개관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¹⁾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6호²⁾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³⁾의 보편적 의무에 해당하는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① 법 제29조 본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의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의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填)할 의무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③ 보편적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전기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시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4)에서 구체적인 감면 비율을 정하고 있음.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 ⑧ (이하 생략)

4)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2. 시외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 감면
3.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4.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5.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6. 인터넷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② 영 제2조제3항제4호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요금 75도수 면제(단, 시내·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시내·외 통화요금의 총도수에서 150도수 면제)
2. 시외전화 서비스: 시외통화요금 75도수 면제
3.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4.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5.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6.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관련 비용 및 기본료 면제, 월 통화요금 150도수 면제

③ 영 제2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④ 영 제2조제3항제10호의 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⑤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서비스 중 가입이 필요한 시내·외전화 서비스,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제공회선 수는 제공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1회선, 단체인 경우에는 2회선에 한정한다. 다만, 시내·외전화 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없이 합산하여 가구당 1회선에 한정하며, 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한다.

- 해당 고시에 따르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등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감면 내용>

구분	내용
대상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 시내전화 서비스 감면 - 시외전화 서비스 감면 - 번호안내 서비스 감면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감면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감면 - 인터넷전화 서비스 감면

2. 디지털복지기금의 설치 및 장애인 등 서비스 비용 감면 지원

기초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금의 재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분담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규정

⑥ 영 제2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한다.)

⑦ 영 제2조제3항의 대상자의 통신요금 감면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⑧ 영 제2조제3항제8호아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를 말한다.

디지털복지기금의 주요 재원인 분담금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
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 그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곱하
여 산정한 부담금이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어, 디지털복지기금을 통하여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권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 6 –

현행	개정안
	한다)을 설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분담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 그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현행	개정안
	<u>사용한다.</u> <u>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u> <u>용도</u> <u>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u> <u>필요한 경비</u> <u>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u> <u>및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u> <u>·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디지털복지기금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중심의 플랫폼 기반으로 데이터 소비 사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등이 제공해야 할 보편적 역무도 단순히 통신 부분 뿐 만 아니라 데이터 소비에도 그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현행 통신사의 요금감면 체계를 살펴보면(참고 1 통신요금 감면제도 현황 참조)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 전화 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회선 사용료 감면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디지털 데이터 소비 등은 감면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어, 정보화 시대에서 디지털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화, 인터넷 통신의 요금감면에서 디지털 콘텐츠 소비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소비권 확대까지 복지감면제도가 확대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모든 부분의 손실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부가통신사업자도 이러한 부담을 함께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어,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에 기반한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우선, 디지털복지기금의 신설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지원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5)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5)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 가능함.

○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기금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⁶⁾에 따르면,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에 따른 효과 증대 여부를 기금 신설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국회에서 기금 신설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동법 제14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기금신설 요청을 받은 후 심사하는 경우와 동일하지 않지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기금 신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임.

- 첫째,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을 검토하면, 주요 재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될 것으로 보이며,

6)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지출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디지털복지기금의 재원과 지출은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 부분에 대해 검토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사회적 취약계층 인원내 대한 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량적인 사업 추진보다 복지 사업과 관련된 의무적인 지출이 주로 발생될 것으로 보이므로 신축적 사업 운영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현행 동 개정안의 기금의 주요 재원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매출액에 근거하는 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은 매년 사업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지원 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부가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지원 규모 확대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종합적으로 디지털복지기금의 설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지출과 연관성은 있으나, 기금의 주요 지원 사업인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의 운영 사업은 신축적인 운영보다 의무지출과 유사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의 변동이 심하여 중·장기적인 재원조달의 가능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기금 신설 이외에도 다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다음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가 확대하고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위하는 서비스 사업의 범위도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중 동 개정안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매출액이 어느 수준인지 다른 매출과 구별하여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2023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 OTT인 웨이브, 티빙 등은 영업이익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

하게 되면 국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하며, 분담금 집행을 담보할 수 없는 해외 사업자에 비하여 국내 OTT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리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웨이브 1,213억원, 티빙 1,192억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내 주요 OTT 서비스 영업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넷플릭스	4,154	88	6,317	171	7,733	143
웨이브	1,802	-169	2,301	-558	2,735	-1,213
티빙	155	-61	1,315	-762	2,476	-1,192
왓챠	380	-155	708	-248	592	-454
구글코리아	2,201	156	2,924	294	3,449	278

자료: '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 동 개정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국민 혜택과 직결된 정책사안인 만큼, 대상·범위·방식 등

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전검토 및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을 운영할 경우 큰 규모의 재원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재원 부담주체와 부담기준 및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 대해 부담금 부과 시 소비자에 부담 전가가 우려되며,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⁷⁾에 따른 부담금 부과 요건의 구체성·명확성 확보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지원 사업은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낮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방송통신 접근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이 존재하여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복지기금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인해서 영상, 음원, 도서 등 문화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다수 콘텐츠 제작·유통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어 콘텐츠산업의 위축 우려가 되며,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공적책무를 부담해야 할 반대급부(공적 자원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지

7)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위 등)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그 지위의 특성상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사업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기금 신설과 부담금 부과 필요성 관련하여,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에서 이미 문화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료(구독료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별도 부담금 등 없이 문화예술기금,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 향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부과 예상 기업에 다수의 미국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 한미 FTA 등 통상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보편적 의무 성격의 의무 부과가 면제되는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있음에도 부가통신사업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의무

성격의 분담금 의무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임.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금을 분담해야 할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동 개정안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에 미국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 간주되는 경우 한-미 FTA 위반 문제 제기 가능성⁸⁾이 있으며, 통상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미국 무역법 제 301조⁹⁾에 해당하여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입장임.

-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사업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발생하는 트래픽 양이 많다는 이유로 그러한 부가통신역무에 보편적 역무로서의 속성이 생겨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디지털이용권 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만 포함시켜야 하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8) **한미 FTA 제 11.3 조**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12.2 조**는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 위주로 보편적 역무 제공 내지 디지털이용권 소요비용 부담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면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임.

9)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르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지우거나 이를 제한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외국의 행위, 정책, 관행(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a foreign country that ar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and burden or restrict US commerce, 이하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차별적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retaliatory action)를 취할 수 있음

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디지털복지기금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이룰 필요성이 있어 입법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지만, 기금 신설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미국 등 해외 국가와의 통상법 위반 가능성, 평등원칙 등의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

【참고자료 1】 통신요금 감면제도 현황

□ 통신요금 감면 제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시행('00년~)

< 통신요금 감면 기준 >

구 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최대 30,000원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기본료 월 26,000원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최대 33,500원	기본료 월 11,000원 감면 및 초과 요금 35% 감면 ※ 최대 21,500원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 최대 11,000원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	-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

□ 통신요금 감면 금액

- '23년 12월 기준 감면자수는 약 789만명, 감면금액은 약 1.26조원

구 분('23.12월)	감면자수	감면 금액
장애인	199만명	3,138억
국가유공자	20만명	307억
기초생활수급자	168만명	4,251억
차상위계층	23만명	595억
기초연금수급자	379만명	4,335억
계	789만명	12,626억

□ 통신요금 감면 절차

- 통신요금감면 대상자가 ①통신사대리점, ②정부24, ③복지로, ④주민센터 중 하나의 기관을 통해 감면 신청을 하면 대상자의 자격 조회 후 감면 적용

※ 통신사는 「전자정부법 제2조」 상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계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대상자격을 조회